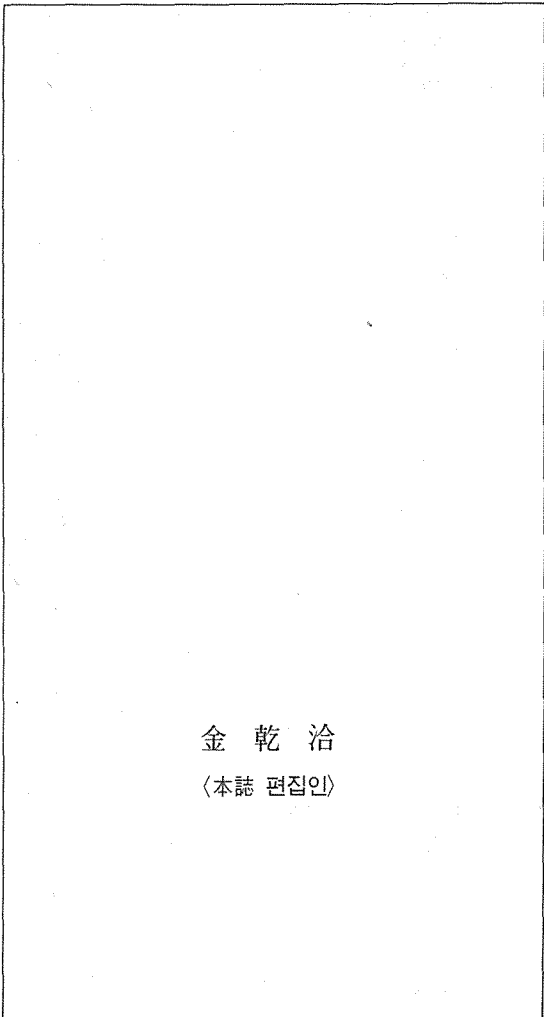


현행 유가관리제도는 그 골격이 형성되었던 70년대와 상이한 여건을 맞이하여 근본적인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국제석유시장의 구조적인 변화와 국내석유산업의 성장, 그리고 국내경제에 있어서 시장기능이 확대되는 추세속에서 정부에 의한 직접적인 유가통제는 장기적으로 국내석

유가관리제도의 재검토



金 乾 治
(本誌 편집인)

유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며,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초래한다는 명분론이 이러한 문제제기의 배경을 이루고 있다.

아직 정부나 정유업계의 입장이나 논리가 정리된 것은 아니지만, 현행 유가관리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 인식을 같이 하는 것 같다. 그것은 국내석유산업의 구조변화로 현행 유가관리제도가 그동안의 실시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과 비효율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유가관리제도의 특징은 다음 몇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로 현행 유가제도는 정부에 의한 전국단일최고가 격 관리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즉 나프타, 고급 및 군용 휘발유, 항공유, 용제, 아스팔트등을 제외한 모든 석유제품에 대하여 각유종단계별로 전국적으로 단일의 최고가격을 정부가 직접 결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둘째로 정유사의 평균비용을 바탕으로 하여 유가를 결정하고 있다. 각원가항목별로 정유5社の 비용을 가중평균하여 제조원가를 산정하며, 이렇게 산성된 원가를 기초로 하여 정유사의 수익을 결정하게 된다.

셋째로 기금과 稅制를 정책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제석유시장에서의 가격변동과 환율변동등에 의한 국내유가의 변동폭을 석유사업기금과 관세를 이용하여 최소화시킴으로써 국내유가를 상당기간동안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넷째로 정부에 의한 정유사의 이익관리를 그 주요특징의 하나로 꼽을 수 있다. 정유5사의 이익은 정유부문 자

가자본에 대하여 10%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 수준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정부가 유가정산을 통해 환수하고 있다.

현행제도는 60년대와 70년대의 경우와 같이, 국내석유산업이 유치단계에 있어서 국제석유시장변화에의 대응능력이 미약하고, 그 산업구조의 기본골격이 정유사의 원유도입-단순정제-제품공급의 체계를 중심으로 하고 있을 때에 적절한 것이었다.

그러나 80년대로 접어들면서 국내석유산업은 성장과 변화를 거듭해 왔다. 국내석유산업은 지난 4반세기동안 석유산업에 대한 경영경험을 많이 축적하였으며, 세계석유시장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능력이 향상되어서 이 시장에서의 대응능력이 크게 증진되었다. 더우기 그 산업구조가 변화하여 종래의 원유도입-단순정제-제품공급의 체계에서 해외개발원유의 도입, 임가공, 중질유분해, 그리고 내수분에 대한 제품수출입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각정유사별로 정제능력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이 차이에서 초래되는 규모경제의 차이는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각사별 영업형태도 다양하여서 내수 전용, 내외수겸용, 석유화학시설의 유무, 운할기유시설의 유무등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국내석유산업의 변화와 다양성을 현행유가관리제도는 적절히 수용하고 있지 못하다. 현재도는 정유부문을 중심으로 한 유가규제를 그 골간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정유사들은 여타부문으로 그 사업영역을 확장시키고 있다. 이 경우 정유부문은 손실담당부문이 되어 유가규제의 효력을 감소시킨다.

또한 현재도하에서는 영업형태의 사별 차이를 감안하지 않은채 정유부문의 원가항목을 채택하여 원가를 산정하고 있으며, 이때 社別 경제규모의 차이를 적절히 고려하지 않고 단순가중평균에 의하여 원가를 導出하고 있다. 이 원가를 바탕으로 하여 결정된 정부의 고시가격은 그것이 포함해야 할 표준원가, 시설확충을 위한 정유사 재원유보, 그리고 공개기업의 재원유보등의 요소가격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유가정산제도는 그 본래의 취지 못지 않게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유가정산제도의 실시이유에 대해 「정부의 석유제품가격 고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특정회계기간중의 허용이익 초과분에 대해 환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정유사의 수익추이

를 보면, 그나마 허용이익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정유5사의 80~88년의 평균이익률은 마이너스 1.7%로 허용이익률에 크게 미달되고 있다. 이같은 이익률은 국내 他산업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실정이며, 외국정유사에 비해서도 저조한 형편이다.

이와같은 결과에 대해 업계에서는 유가정산방법의 객관성 결여와 신규발생비용을 유가에 반영하지 않은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한다. 결국 유가정산제도는 업계의 경영 개선에 의한 이익증가가 전액 유가로 환수됨으로써 경영 개선 노력에 대한 유인이 부족하며, 自社의 비용절감과 수익성개선이 전액 자사의 이익으로 귀착되지 않음으로써 민간기업의 창의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최근 논의의 초점은 유가정산제도 존속여부에 모아지고 있다. 어떤 사람은 정유사의 책임경영의식을 고취시키고 효율적인 경영을 추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정유사에 대한 유가정산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현재와 같은 유가체제하에서는 폐지보다는 보완으로 운영의 妙를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석유는 국내에너지시장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主宗에너지源으로서 국가경제의 전부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석유의 효율적인 공급, 즉 低價 안정적인 공급은 에너지정책의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의 달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써 정부는 국내유가를 직접적으로 관리해 왔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70년대 세계석유시장에서의 격동기를 극복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80년대로 들어서면서 이 석유시장이 구조적으로 변화하게 되고, 따라서 정부에 의한 직접적인 유가관리의 타당성이 상실되어가고 있다. 즉 정부의 유가통제는 정유산업 경영에 많은 비효율성을 유발시키게 되고, 결국에는 석유의 효율적인 공급체계의 구축을 저해하게 된다.

정부의 지나친 시장규제는 많은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반면, 국내석유시장은 그 불완전성으로 인해 모든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없다. 따라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는 정부와 시장이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석유의 효율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다는 공동의 인식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정유산업의 현안과제인 시설고도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허용이익률의 제검토와 함께 사후정산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